



‘믿음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정부기업’

우정공무원교육원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우정공무원교육원 훈령발령(제173호)

1. 관 련

- 가. 교육지원과-1365(2017.03.21., 우정공무원교육원 훈령 및 예규 일제 정비)
- 나. 교육지원과-2866(2017.06.19., 우정공무원교육원 행정규칙 개정 발령 및 폐지)
- 다. 운영지원과-3316(2017.12.29., 우정사업본부 성희롱·성폭력 예방지침 알림)

2. 「우정공무원교육원 성희롱·성폭력 예방지침」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.

가. 개정이유

- 각계 전반에 걸쳐 성희롱·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원의 지침을 재검토하여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항의 정확화

나. 개정내용

- 기존 ‘성희롱’ 으로만 한정된 내용을 ‘성희롱·성폭력’ 으로 범위 확대
- 성희롱·성폭력의 정의 추가(제3조)
- 기관장의 책무를 세부적으로 추가하여 책임 강화(제4조)
- 성희롱·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내용 변경(제11조)

붙임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.

2. 개정전문 1부.

3.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

4. 일부개정안 1부. 끝.

★주무관

김선경

운영지원팀장

이미영

교육지원과장

문성용

원장

06/25
이영구

협조자

시행 교육지원과-3506 (2018.06.25.) 접수 ()

☎ 31068 충남 천안시 동남구 양지말1길 11-14(유량동) / <http://www.koreapost.go.kr/>
전화 [\(041\)560-5135](tel:0415605135) / 전송 (041)560-5139 / asdf2200@koreapost.go.kr / 공개